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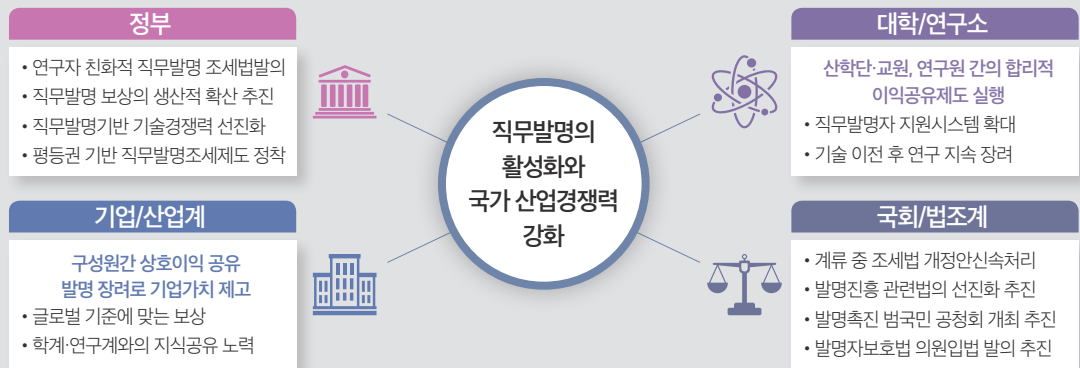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우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과 기술경쟁 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가 기술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은 연구원들이 발명 의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차별적 과세로 인해 R&D 선순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연구발명의욕→우수특허생산→기술이전→적절한 보상→국가 기술혁신’이라는 국가 R&D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연구발명의욕 저하로 첫 단계부터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연구현장에 있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 지식재산, 산학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법안의 개정으로 발명자의 의욕을 살려 직무발명이 활성화 되고 국가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발명자의 발명 의지가 되살아나면, 첨단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의 혁신기술 개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수익이 창출되면 추가적으로 법인세나 주식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해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세수 손실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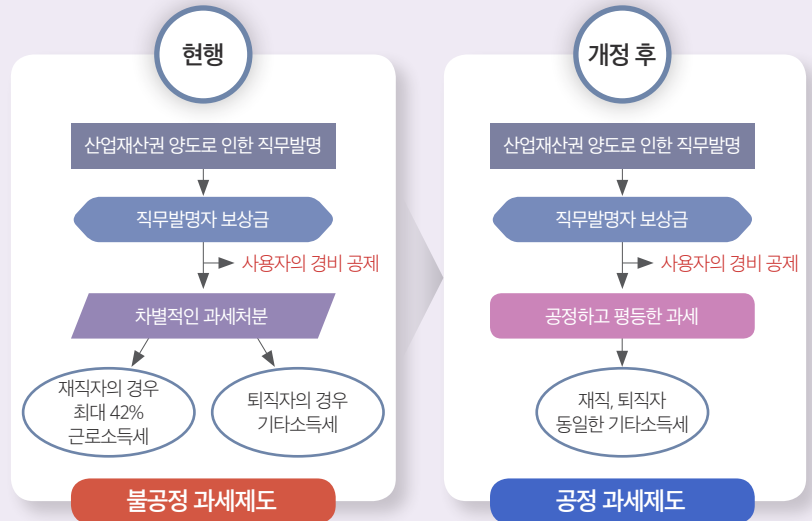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198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가 전액 비과세로 한 덕에 연구발명자들은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발명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오늘의 국가과학기술력과 경제적 위상을 갖추는데 일조했다. 정부, 입법관계자, 산업계 등이 일치단결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한다면 우리나라는 발명자들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 9.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공평과세

다른 산업재산권 양도와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금도 근무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만큼, **발명자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해야 한다.** 근무 지속 여부가 동일 소득에 대한 성격이나 담세력의 차이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활동이 왕성한 재직 연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부과되는 막대한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산업화 지원 연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재나 제품 생산을 막아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의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조세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만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대학 교직원이나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나타내며 발명의 결과물은 발명자주의 원칙(Erfinder-prinzip)에 따라 발명자의 원시적 소유다. 실제 국가 전체특허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R&D 결과물의 핵심자원이며 국가 기술경쟁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직무발명으로 생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소유를 기업체나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관리하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직무발명 조세제도라고 한다.

02

고용관계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대학의 발명연구와 관련해서 교직원은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실제 사용자는 대학(총장)으로,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과 교직원은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의 성격

직무발명보상금을 급여의 일부인 상여금으로 취급해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03

상여금은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일종이 아니다. 당연히 기타소득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경쟁상대인 일본의 경우도, 이를 근로소득의 종류인 상여금이 아닌 “일시적인 잡(雜)소득”으로 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04

비과세 한도

특허권 양도 관련 직무발명 소득세 부과 시 적정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같은 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어있다.

현재 전국 직무발명 평균 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영세함을 감안하여 기타소득에서 정하는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발명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건의문 골자안

첫째: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의 비과세소득을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22호의2 등의 삭제 및 간주필요경비 규정 정비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제22의 2.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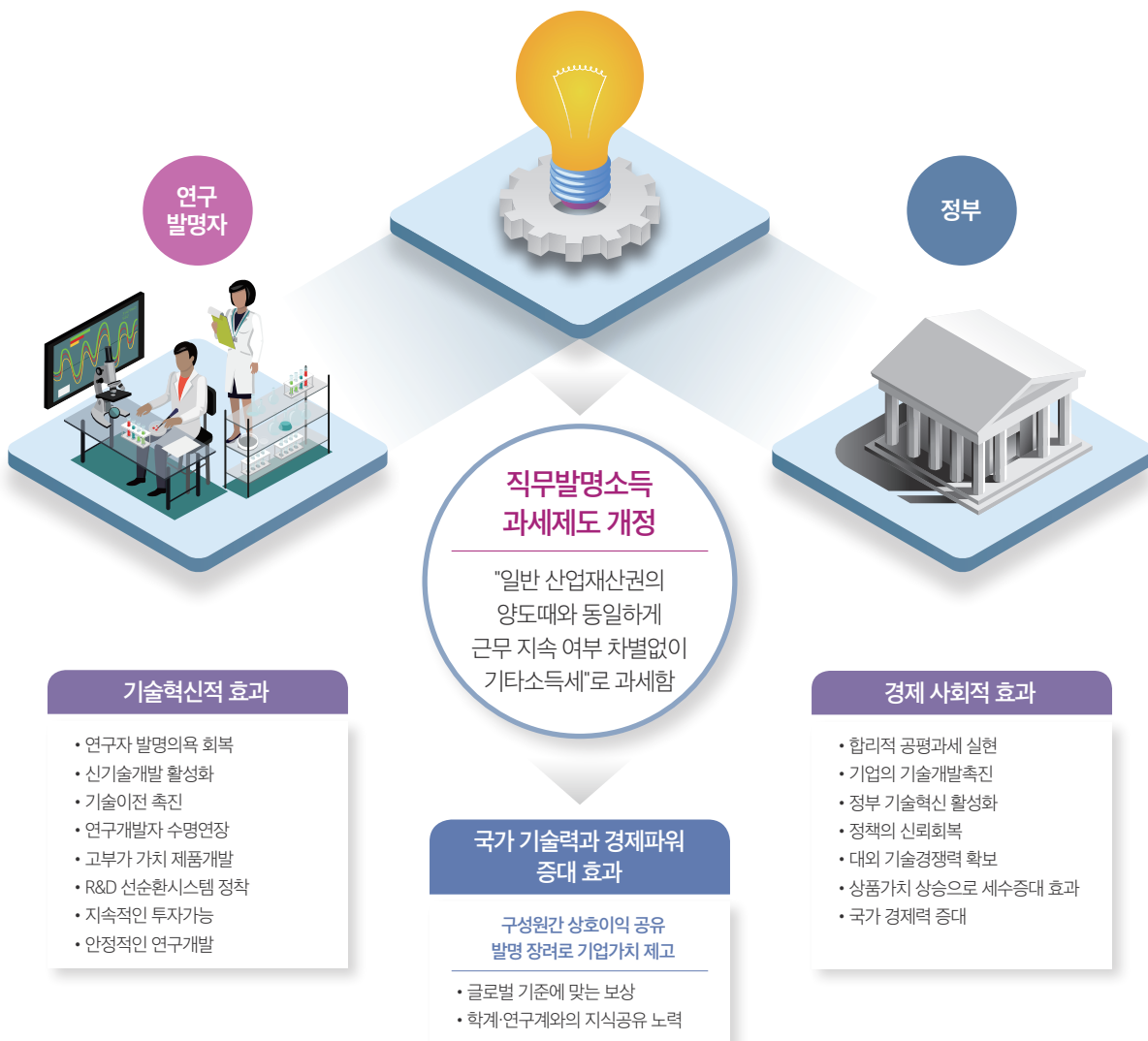
(제20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될 경우 22의2는 불필요함)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3,000 만원까지로 상향

직무발명 보상소득에 조건부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직무발명 보상소득이 무조건적인 종합과세로 변경된 사유는 2016년 12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방식 개정 당시에 조건부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명시하는 신설 조문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를 열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여진다.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데, 이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각 분야 연구 리더들이 한림원의 회원이며, 각자의 역량과 지혜, 리더십을 결집하여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 국가정책기관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제시하고, 첨예한 논쟁에 직면한 쟁점들에 대해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과 정책 대응,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홈페이지 www.kast.or.kr
블로그 kast.tistory.com
포스트 post.naver.com/kast1994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tnews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Tel. 031.726.7900 Fax. 031.726.7909

